

병·의원,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별도 제출해야

부가가치세 개정내용에 미용목적의 피부과 시술 과세대상 포함



글 홍승안
세무법인 한맥 대표 세무사

새해 첫날 국회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세법 개정안의 최대 화두는 소득세 법상 과세구간의 조정이었다. 국회 내에서 과세구간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나 결국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은 낮춰지게 되었다. 기존 3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인 38%의 세율을 적용 하였으나, 세법 개정으로 1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다.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눈에 띄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소득세율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하게 된다. 병의원등의 면세 개인사업자는 매년 2월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신고된 수입금액을 토대로 5월 종합소득세를 산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른 사업장현황 신고 때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사업장 현황신고 및 개정 세법에서 병의원 관련 사항을 알아보자.

먼저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면적, 종업원, 임차료, 인건비 등)을 기재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하는 것이 사업장현황신고이다. 이는 과세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면세사업자에게 수입금액과 제반사항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병원 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이다. 사업장 현황신고시 필요서류로는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필요하다. 열거한 서류외에 업종별 별도 제출서류가 있다. 병의원은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를 별도로 제출 해야한다. 이는 대체로 수입금액도 많고,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세금을 적게 신고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로 수입금액검토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한 것 이다. 특히 병·의원 중 성형외과·안과·치과·피부과·한의원은 수입금액검토부표를 제출해야 한다. 병의원 중에서 현금매출이 많고 수입금액 누락이 용이한 분야의 병의원은 추가로 수입금액검토부표를 제출하도록 하여 수입금액 신고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 것 이다.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작성은 수입금액 확정과 기본경비 파악에 관한 자료가 되므로 작성시 주의하여야 한다. 병의원의 경우 수입금액을 과소신고 하면 과소신고분의 0.5%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확한 수입금액의 파악이 중요하다. 병의원의 총수입금액은 건강보험수입, 비보험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건강보험수입은 보험청구로 인해 지급하는 사업자나 법인으로 부터 원천징수후 지급받기 때문에 수입금액 파악이 어렵지 않다. 비보험 수입 파악시 주의할 점은 진료비 카드결제분에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비급여 항목 결제액만을 포함시켜야 건강보험수입과 수입

금액이 중복되지 않는다. 기타수입은 각종 증명발급수수료,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을 포함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신고시 과소신고가 의심되거나 무신고시에는 국세청에서 사업장 현지확인조사가 나오며 이는 세무조사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입금액과 비용을 신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병의원과 관련된 개정세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부가가치세 개정내용에 미용목적의 피부과 시술이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미용목적의 피부관리 시술로 과세가 확대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교정술과 함께 점·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 여드름 치료, 제모술, 탈모치료, 모발이식술 및 기타 미용 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 면세사업자인 피부과 병의원들은 미용목적의 피부과 시술이 행해진다면 겸영사업자로 전환해야 한다. 겸영사업자로 전환되면 기존에 면세사업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던 부분이 과세사업에 사용된 매입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매입한 재화나 용역이 과세와 면세에 동시에 사용된 경우에는 과세매출액과 면세매출액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사업해당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면세사업자에서 겸영사업자로 전환되면 기존에는 1년에 한번 사업장현황신고를 이행하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마다 신고해야 한다.

둘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제도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일부 업종에 대해서 시행된 것으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금액의 50%만큼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소득세 및 가산세와는 별도로 매겨지는 세금이다. 다만 10만원 이상 의무발행규정은 2014년 7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치과의사 K씨는 304억원의 현금 영수증을 미발행하고 그 중 195억원의 현금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약 80억원의 추징금(소득세, 가산세)과 152억원의 과태료를 물어내야 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린 것이다. 국세청에서 고소득 자영업자나 병의원 세무조사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추세이므로 병의원장은 법규정액 이상의 현금수입이 발생한 경우 환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병의원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 처음에는 미용목적의 쌍꺼풀 수술 등 일부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켰으나 미용목적의 피부관리 시술 및 탈모치료 등까지 확대한 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계속 과세대상은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이 대폭 낮춰짐으로 인해 수입금액의 투명성도 높아 질 수밖에 없다. 병의원들의 철저한 세무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계획적인 비용지출과 수입금액의 정확한 파악을 해야 하며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주기적 세무상담을 받아 절세방안을 찾아야 하겠다. □

※문의 : 세무법인 한맥 www.han-maek.com ☎(02)486-0514